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의안 번호	1311
----------	------

제출년월일 : 2005. .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신설된 업종 중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대한 과징금처분의 경우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하는 규정과
-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정비로 기금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영업자(정의)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를 추가함 (안제2조).
- 나. 재원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교부금을 추가함 (안제3조)
- 다. 기금의 사용 시기에 대한 규정을 없애고 기금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토록 함 (안제4조)
- 라.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담당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함 (안제6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 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사전 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 2005. 1. 3 ~ 1. 22 (20일)

□ 기타 참고사항

-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2항”으로 하고 “법 제22조”를 “법 제22조 및 법률 제6조”로 한다.

제3조중 “제2호 내지 제3호”를 “제3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법률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한 교부금.

제4조제2항중 “사용 시기는 기금의 조성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되”를 “사용은 기금의 조성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하되”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6항중 “위생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환경위생과
입 안 자	직위·성명	환경위생과장 박 강 호
	직위·성명	위생담당 유 현
	담당자 성명·전화	배 진 수 (행정 223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영업자”라 함은 <u>법 제21조제2항</u>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u>법 제22조</u>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 한다.</p> <p>2~3. (생략)</p> <p>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u>〈신설〉</u> 2. <u>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u> 3. <u>기타수입금</u> <p>제4조(기금의 사용) ① (생략)</p> <p>② <u>기금의 사용시기는 기금의 조성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되</u> 기금의 안정과 효과적인 기금의 사용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p> <p>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①~② (생략)</p> <p>③ <u>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u></p> <p>④~⑤ (생략)</p> <p>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u>위생과장</u>이 된다.</p>	<p>제2조(정의) -----</p> <p>1. ----- <u>법 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u>(이하 “법률”이라 한다) <u>제4조제2항</u> ----- <u>법 제22조 및 법률 제6조</u></p> <p>2~3.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금의 조성)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한 교부금</u> 3. (<u>현행 2호와 같음</u>) 4. (<u>현행 3호와 같음</u>) <p>제4조(기금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사용은 기금의 조성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하되</u> -----</p> <p>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이 된다.</u></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 <u>업무담당과장</u>-----</p>